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기준금액 및 위반기간 산정기준의 고려사항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안 [별표 2]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1)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란 중 “2.5%”를 “2.0%”로 하고, 같은 나) 중대성의 정도란 중 “중대하지 않은”을 “중대성이 약한”으로 하며, 같은 1) 다) 중 “하며”를 “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의 취득 및 피해의 종료 또는 지속여부, 위반행위의 연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로 하고, 같은 1) 라)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1)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의 취득 및 피해의 종료 또는 지속여부, 위반행위의 연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관련 매출액은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정한다.

라)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되,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실적·사업계획·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

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기준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억원 이하

마) 나)와 라)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1)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 미친 영향
- (2) 이용자의 피해 규모
- (3)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정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생략) 2. 과징금의 산정 절차 및 기준 가. (생략)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생략) 나)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대성의 정도</td><td style="text-align: center;">부과기준율</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 style="text-align: center;">1%~ <u>2.5%</u></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대한 위반행위</td><td style="text-align: center;">0.5%~ 1%</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td><td style="text-align: center;">0.5% 이내</td></tr> </table> 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u>하</u>며, 관련 매출액은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 <u>2.5%</u>	중대한 위반행위	0.5%~ 1%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	0.5% 이내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과징금의 산정 절차 및 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대성의 정도</td><td style="text-align: center;">부과기준율</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매우 중대한 위반행위</td><td style="text-align: center;">1%~ <u>2.0%</u></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대한 위반행위</td><td style="text-align: center;">0.5%~ 1%</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td><td style="text-align: center;">0.5% 이내</td></tr> </table> 다) ----- ----- -----하 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의 취득 및 피해의 종료 또는 지속여부,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 <u>2.0%</u>	중대한 위반행위	0.5%~ 1%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 이내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 <u>2.5%</u>																
중대한 위반행위	0.5%~ 1%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	0.5% 이내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 <u>2.0%</u>																
중대한 위반행위	0.5%~ 1%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 이내																

라)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하되,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실적·사업계획·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기준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 신 설 >

연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

-----.

라) -----

-----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되,

-----.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억원 이하

마) 나)와 라)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2) ~ 3) (생략) 3. 세부기준 (생략)	<u>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u> <u>(1)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u> <u>여부 등 시장에 미친 영향</u> <u>(2) 이용자의 피해 규모</u> <u>(3)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u> <u>이용자의 피해 회복에</u> <u>노력한 정도</u> 2) ~ 3) (현행과 같음) 3. 세부기준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연락처	(02) 2138 - 1524